천안산학협력단 특임교수 운영에 관한 규정

<제정 2008.06.24.>, <4차 개정 2022.06.20.>

- 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 의 수주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"산학협력단 특임교수"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제 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(정의) 산학협력단 특임교수라 함은 산학협력단에 소속하는 자로서 총장이 계약직으로 위촉하는 교수를 말한다.
- 제 3 조(자격) 산학협력단 특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 해당자로 한다.
 - 1. 국내·외 대학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동 기관에서 연구책임자로 외부 산학과제를 수행한 자
 - 2. 산학협력 관련기관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관련 분야에 식견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
 - 3. 산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실무경력이 탁월하며 산학협력에 관련된 교육과 연구가 가능한 자
 - 4. 산학협력 및 학문적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
- 제 4 조(소속 및 복무) ①산학협력단 특임교수의 소속은 산학협력단으로 한다.
 - ②산학협력단 특임교수는 산학협력단장의 지휘에 따라 소정의 프로젝트 수주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 5 조(위촉) ①산학협력단 특임교수의 위촉은 우리대학교 전임교수(정년트랙) 및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.
 - ②산학협력단 특임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, 재위촉시 산학협력단장의 성과 평가 후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. 단, 학기 중 위촉된 특임교수의 위촉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학년말까지로 한다.
- 제 6 조(처우) ① 산학협력단 특임교수에게는 연구과제 참여율에 의한 수당을 지급 한다.
 - ② 산학협력단 특임교수에게는 필요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.
 - ③ 산학협력단 특임교수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 내 시설을

- 이용할 수 있다.
- 제 7 조(면직) 산학협력단 특임교수가 다음 각 1호에 해당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에 게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에게 면직을 요청할 수 있다.
 - 1. 특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계약의 해약이나 기간의 종료
 - 2. 특임교수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계약의 조기종료를 결정할 때
 - 3. 기타 계약에 정한 해임요건이 발생한 때
- 제 8 조(규정개정)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 9 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- 이 규정은 2008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